

2026. 5.

## 독일 뮌헨 구법원(AG München),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한 로고(Logo)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제시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 1. 개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고품질의 그래픽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가 저작권법 학계와 실무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뮌헨 구법원(AG München)<sup>1)</sup>은 2026년 2월 13일,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된 로고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하였다.<sup>2)</sup>

이 판결은 독일 저작권법(UrhG)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저작물의 개념을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소프트웨어에 의한 자동화된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창작적 영향력이 산출물에 어느 정도 행사되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였다.

### 2. 주요 내용

#### 1) 사실관계

원고는 생성형 AI인 'C'를 사용하여 세 가지 형태의 로고를 제작하였다. 해당 로고들은 아래와 같이 ①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두 사람의 악수와 울리는 종(이하 '악수와 종 로고'), ② 기둥이 있는 건물 앞의 편지봉투(이하 '편지봉투와 건물 로고'), ③ 법전과 법조문 표시(§)가 보이는 노트북(이하 '법전과 노트북 로고') 형상을 하고 있다.



1) 구법원(AG, Amtsgericht)과 지방법원(LG, Landgericht)은 소송가액과 사건의 중요도 및 복잡성에 따라 구분됨.

2) AG München, Urteil vom 13.02.2026 - 142 C 9786/25.

##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I의 프롬프트에 때로는 상세하게, 때로는 반복적인 수정 지시를 통하여 위의 각 로고를 생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가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한 위 로고들을 원고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웹사이트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5년 7월 3일 서면을 통해 해당 로고들의 삭제와 향후 게시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저작권 침해에 따른 금지 청구 및 삭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 (1) 원고의 주장 : AI는 도구일 뿐, 창작의 주체는 인간임

AI의 사용은 기존의 창작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산출물이 인간의 정신적 창작 행위에 기인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AI의 프롬프트에 입력한 작업 지시어에는 원고의 창작적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원고의 머릿속에 형성된 구상을 현실 세계로 구현한 것이다. 특히 반복적인 수정 과정은 조각가가 돌을 깎아 동상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며,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산출물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창작적 개입이 수행되었다.

### (2) 피고의 주장 : AI 생성물은 인간의 저작물이 아님

저작물은 인간이 직접 생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AI 생성물은 인간의 창작적 노력 없이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 생성된 것이므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사용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발주자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일 뿐이며, 실제 요소의 선택과 조합 등 핵심적인 창작 과정은 AI가 수행하였다. AI는 사용자에게 내부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아서, 사용자가 최종 산출물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산출물은 사용자의 결정이 아닌 AI 알고리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 3) 판결의 중요 내용

### (1) 저작권법상 저작물 개념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만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 조항의 저작물 개념은 유럽연합(EU) 저작권법의 자율적인 개념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EU 저작권법의 저작물 개념은 두 가지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 첫째, 해당 대상은 저작자 자신의 정신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인 대상'(ein Original)<sup>3)</sup>이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독창성을 가진 대상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독창성(Originalität)이란 저작자가 창작 과정에서 자유로운 창조적 결정(=선택)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개성(Persönlichkeit)을 산출물에 반영했을 때 인정된다. 이에 반해 해당 대상의 형성(Gestaltung)<sup>4)</sup>이 기술적 고려 사항이나 규칙, 또는 예술적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3) 여기서 Original은 '원본'이 아니라 '독창성을 가진 대상'을 의미한다.

4) 저작권법에서 'Gestaltung'은 아이디어가 외적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형성 또는 형태의 조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 선, 색채, 구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외적 형태를 실제로 빚어내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제약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독창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sup>5)</sup>

###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인정 기준

학계의 통설에 따르면<sup>6)</sup>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생성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의 창작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인간의 개입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산출물에 프롬프트 입력자의 개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작품의 형성에 인간이 창조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이는 생성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설정이나 생성된 결과물들에 대한 선택 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AI가 제시한 여러 안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단순 선택 만으로는 부족하며, 생성 과정이 전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결정적인 기준은 사용자의 프롬프팅이 자신의 창작 능력을 독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용자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종 산출물에 자신만의 개인적인 특색(Personliche Note, Personal Touch)<sup>7)</sup>을 남겨야 한다. 즉, 산출물의 형성이 AI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적 정신을 표현해야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비유적으로 AI의 모델이 독립적인 창작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창작을 돕는 보조 수단(Hilfsmittel)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입력값(Input)은 산출물(Output)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징지어야 한다. 즉, 프롬프팅 과정에서 투입된 창조적 요소들이 산출물을 완전히 지배하여, 해당 대상 전체가 인간 저작자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간주될 수 있을 때에만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프롬프팅 과정에서 단지 일반적이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지시를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AI에게 형성적 결정을 맡기는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지시가 다수이고 그로 인해 산출물의 외관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성 인정에 충분하지 않다. 원고의 견해와 달리, 그가 인공지능의 유료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했는지, 법원이 그의 금지 청구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소송가액을 인정했는지, 또는 프롬프트가 얼마나 공들여 신중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수공업적(=기술적) 활동에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투자 비용, 시간 소요 또는 근면함을 보상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작적 활동의 결과물만을 보호한다.

### (3) 문제가 된 로고에 법리의 적용

법전과 노트북 로고의 경우 원고의 개성이 창작적으로 발현된 지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인공지능에 내린 지시는 단순히 “법령 텍스트 웹사이트를 위한 단순하지만 특이한 로고”를 생성해달라는 두 줄

5) EuGH, Urteil vom 12. September 2019, C-683/17 -, Rn. 29 – 31, juris.

6) 뮌헨 구법원은 학계의 통설을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따름.

7) 저작자의 개성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독창적인 특징을 말함.

의 설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시는 AI가 생성한 산출물에 어떠한 창작적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편지봉투와 건물 로고를 작성하기 위해 1,700자에 달하는 방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했으나, 이러한 시간적 노력이 저작물성 인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프롬프트의 내용 또한 “현대적”, “미니멀”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어 산출물의 구체적인 외관을 결정짓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형성의 구체적인 선택(파동, 색상 등)을 AI의 규칙에 맡겼으므로, 이는 인간 디자이너에게 내리는 서면 작업 지시서와 다를 바 없다.

원고는 약수와 종 로고의 작성에서 가장 정교한 수정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최초 지시어(취업 앱을 위한 신뢰감 있는 약수와 종 모양 로고 생성 등)는 단순한 요구사항의 나열이었고, 이후의 수정 지시들(피부색 교정 등)은 창조적 활동이라기보다 수공업적 보정에 가깝다. 또한 “더 여성스럽게”, “예술적으로”와 같은 원고의 지시는 결과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창조적 결정을 여전히 AI의 규칙에 맡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AI의 기술적 작업이 원고의 창작적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산출물에서 원고의 개성이 명확히 식별된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및 시사점

#### 1) 생성형 AI 산출물에서 저작권의 진공 상태 확인

이 판결은 프롬프트 입력 행위가 저작권법의 정신적 창작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문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원헌 구법원은 프롬프트의 길이나 제작에 투입된 시간보다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과 개성의 각인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실무적으로 대다수의 순수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에 머물게 됨을 의미하며, 이용자는 상업적 이용권을 가질 수 있으나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독점적 권리는 갖지 못하는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

#### 2) 도구와 대행자 사이의 입증 책임의 강화

이 판결은 AI를 중립적 도구로 보려는 전통적 대륙법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스스로 결과물을 구성하는 ‘분산된 창의적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이 AI 생성물에 대해 기존 저작물보다 더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는, 향후 이용자들이 자신의 창작적 개입(선택, 수정, 보정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실무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3) 비보호와 침해의 이중적 리스크

이번 판결과 2025년 11월 OpenAI와 GEMA 사건에 대한 원헌 지방법원의 판결을 비교해 보면, AI 생성물은 자신의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못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저작권은 침해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지대에 놓여 있다. 지

방법원판결이 AI의 학습 및 출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억현상에 의한 복제권 침해를 인정한 만큼, 이용자는 자신이 만든 AI 로고가 독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이중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

## 참고자료

---

- AG München, Endurteil von 13.02.2026 - 142 C 9786/25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Y-300-Z-BECKRS-B-2026-N-1513?hl=true>)
- beck-aktuell, Urheberrecht an KI-Logos: Ein bisschen Kreativität muss sein (<https://rsw.beck.de/aktuell/daily/meldung/detail/ag-muenchen-142c9786-25-urheberrecht-ki-logos-kreativitaet>)
- Georgia Jenkins, Skating between human magic and machine, the fragile fate of generative AI 'works', The IPKat (<https://ipkitten.blogspot.com/2026/02/skating-between-human-magic-and-machine.html>)
- 박희영, 원산지방법원: OpenAI ChatGPT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 판결, 이슈리포트 2025-11, 저작권 위원회.